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	드	명	BNK튼튼중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정	정	서	류
			(간이)투자설명서
정	정	사	유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
효	력	발	생 일
			2025년 05월 15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				
[요약정보]							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</u> 이며, (생략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이며, (현행과 동일)	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				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				
운용전문인력	-	-	-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	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종류(Class)</td> <td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d> </tr> </table>	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종류(Class)</td> <td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d> </tr> </table>	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
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
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

		<p>온라인슈퍼(S)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온라인슈퍼(S)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</p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.</u>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
[요약정보]
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</u>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</u>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

운용전문인력	-	-	-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					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(Class)</th> <th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온라인슈퍼(S)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(Class)</th> <th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온라인슈퍼(S)</td> <td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				
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									
종류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				
온라인슈퍼(S)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									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5.05.15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				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								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가. (생략) 나. 종류형 구조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63 190 1019 875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종류형 구조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48 190 1505 875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
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			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
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							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문구 정정	가. 투자 대상 - 다음 각호의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해지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생략) 나. (생략)	가. 투자 대상 - 다음 각호의---(현행과 동일)--- 합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					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 서식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합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가. ~ 다. (생략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추가>	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표1>								
11. 매입, 환매,	금융투자회사의	가. 매입	가. 매입								

<p>전환 기준</p>	<p>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	<p>(1) (생략) 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61 190 1007 913"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td> </tr> </table> <p>(3)~(5) (생략) 나. 환매 (1) ~ (9) (생략) (10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<신설></p> <p>다. (생략)</p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<p>(1) (현행과 동일) 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45 190 1490 913"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td> </tr> </table> <p>(3)~(5)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~ (9) (현행과 동일) (10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45 1144 1490 1332"> <tr> <th>중도환매 불가</th> <th>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</th> <th>중도환매 허용</th> </tr> <tr> <td>-</td> <td>-</td> <td>0</td> </tr> </table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	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-	-	0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		
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										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		
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																
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														
-	-	0															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61 1424 1007 1507"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45 1424 1490 1507"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		

		<p>S</p> <p>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S</p> <p>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<u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(이하 생략)</p> <p>(2) ~ 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</p> <p>- 분리과세한도:</p> <p><u>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u>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<삭제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(2)~ 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</p> <p>- 분리과세한도:</p> <p><u>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u></p> <p><u>연금소득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(2024년 1월 1일 이</u></p>

		(5) (생략)	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 (5) (현행과 동일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 기준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5.04.22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	가. ~ 다. (생략) 라. (1)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(2)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(1)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(2) (현행과 동일)

<표1>

[수익률 변동성 기준(97.5% Var 모형 사용) - 설정 후 3년 경과 시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97.5% VaR	50%초과	50%이하	30%이하	20%이하	10%이하	1%이하

*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

* 수익률 변동성 기준 :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<끝>.